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02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 한준호 · 복기왕 · 박상혁

김병주 · 김문수 · 민형배

박용갑 • 이용우 • 정준호

김민석 · 정을호 · 김영환

김용민 · 이건태 · 이소영

김성회 · 김동아 · 조승래

모경종 • 박균택 • 전혐희

이성윤 • 남인순 • 박선원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의견청취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 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 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 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 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 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 다.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기준"을 "운영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좌석배정"으로 한다.

③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가족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와 가족등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생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2
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u>대</u>	<u>다</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u>o</u>]
있다. <u><후단 신설></u>	경우 의견청취기간은 14일 이
	<u>상으로 한다.</u>
<u><신 설></u>	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
	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
	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
	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
	체 중에서 선정할 것
<u><신 설></u>	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
	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
	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에 관한 사항
	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
	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
	<u> </u>

③ • ④ (생 략)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 공) ①・② (생 략) <신 설>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④ (현행과 같음)
- 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이 하 이 조에서 "가족등"이라 한 다)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 자와 가족등의 좌석을 연접하 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4 --------운영기준 및 제3항에 따 른 좌석배정-----